

42.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8년 9월 21일
- 발 의 자 : 김지만 의원, 장상수 의원, 김혜정 의원, 이만규 의원
임태상 의원, 이영애 의원, 하병문 의원, 박갑상 의원,
박우근 의원,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18년 9월 28일
- 상정일자 : 제26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8년 10월 12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위원 김지만)

□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대구광역시의회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됨.

□ 주요내용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사용하도록 함 (안 제3조)
- 업무추진비 사용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집행기준을 정함 (안 제4조)
- 업무추진비의 공적인 의정활동 이외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사용제한 사항을 명확히 함 (안 제5조)
- 매월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박재봉)

□ 개정취지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성을 높이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집행기준을 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공적인 의정활동 이외의 사용을 제한 하도록 하는 등 사용제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매월 1회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 조례 제3조(기본원칙)는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행정안전부 예규로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집행대상 직무활동범위와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등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 조례안 8조 1항의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의 징계에 관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없음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함.

6. 수정안 요지

- 제8조에 교육 및 점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제9조제1항에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조치내용과 제9조제2항에는 제1항의 징계요구는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제1항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첨부서류

- 위원회 수정안 : [붙임1]

[붙임1]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은 제정안의 제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요구는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조치한다.

제정안의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u><신 설></u></p> <p><u>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u> ① 의회 의장은 조례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생략)</p> <p><u>제9조(시행규칙) (생략)</u></p>	<p><u>제8조(교육 및 점검 등)</u>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p> <p><u>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u> ① (제정안의 제8조제2항과 같음) ② 제1항의 징계요구는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조치한다.</p> <p><u>제10조(시행규칙) (제정안 제9조와 같음)</u></p>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 함은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 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해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위문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 2.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 3.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
- 4.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7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계요구는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조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